

# 2025. 3. 5.(수) 실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 일정

※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은 “법”으로,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」은 “규”로, 「새마을금고정관(예)」는 “정관”으로 각각 약기함.

시행일정	요일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규
'24. 9. 1.까지	일	해당 금고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	관할위원회	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	규§3②
9. 21.	토	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	위탁단체	임기만료일전 180일	법§8
9. 21.부터 '25. 3. 5.까지	토 수	<b>기부행위제한</b>	후보자(예정자포함), 후보자의 배우자,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	위탁신청일*부터 선거 일까지 * 제1회 이사장선거시에만 적용	법§34 법§35 부칙<3. 8. 8.> 제2조
9. 22.까지	일	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	위탁단체	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	규§3②
'25. 1. 15.까지	수	해당 금고 회원명부 정비	위탁단체	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	법§15④
1. 21.부터	화	예비후보자등록 신청	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	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 부터	법§24의2①
2. 14.부터 2. 18.까지	금 화	<b>선거인명부 작성</b>	위탁단체	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	법§15①
2. 17.까지	월	<b>입후보하는 임·직원 등 사직기한</b> 해당 금고의 임·직원, 다른 금고의 임·직원 및 대의원, 공무원의 사직기한(단 선출직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고 적용 제외) ※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대상 아님.	후보자가 되려는 사람	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	정관§39
2. 18.부터 2. 19.까지	화 수	<b>후보자등록 신청</b> (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)	후보자가 되려는 사람	선거기간개시일전 2일 부터 2일간	법§18①
2. 19.부터 2. 21.까지	수 금	선거인명부 열람 (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)	선거권자는 누구든지	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	법§16①
2. 20.	목	<b>선거기간개시일</b>			법§13
2. 22.까지	토	선거공보, 선거벽보 제출	후보자	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 까지	법§25①§26①
2. 23.	일	<b>선거인명부 확정</b>	위탁단체	선거일전 10일	법§15①
2. 23.까지	일	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	관할위원회	선거일전 10일까지	규§18①
2. 25.까지	화	<b>투표안내문 발송(선거공보 또는 범죄 경력에 관한 서류 동봉)</b>	관할위원회	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	법§25③ 법§43
2. 28.까지	금	개표소 공고	관할위원회	선거일전 5일까지	규§25①·②
3. 3.까지	월	투표참관인 선정·신고	후보자	선거일전 2일까지	법§45①
3. 4.까지	화	개표참관인 선정·신고	후보자	선거일 전일까지	법§45①
3. 5.	수	<b>투·개표</b>		투표시간 :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	법제8장
4. 4.까지	금	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	관할위원회	선거일후 30일까지	규§44②